

학교법인순장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 직할 하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 진리, 평화를 교육하여 온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순장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4가길 45-1호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첨 1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총회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②제①항의 이사 중 1인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원대학교의 장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임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이 이사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③제1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대학원대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총회” 소속 세례교인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①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총회” 소속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이 학교 법인의 설립자

2. 이 학교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학교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이었던 사람
4. 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는 3인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 20조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종교단체(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2.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777조의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신설 2006.11.01.)

제32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2조의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②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③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32조의5(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2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①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③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④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⑦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해산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기독교 학교법인이나 기독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 한다.

제5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0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삭 제>

③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근무기간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부 교 수 7년

㉢조 교 수 6년

2.급여 : 정관 제47조에 정하는 보수

3.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세부전공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4.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대학원대학교의 총장은 제③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원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①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삭 제>

⑦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1차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⑧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협의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41조(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임시교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③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④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⑤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⑥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 된 때

⑦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⑦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⑧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⑨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⑩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⑪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⑫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⑬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제4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제4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제4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④제42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제42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⑥제42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42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⑧제42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⑨제42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제42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⑪제42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2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2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42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을 이유로 인 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임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48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의2(교원의 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교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③삭제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정관 제5장 제2절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명예퇴직) ①이 법인의 직원과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퇴임 전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총장이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②총장이 보직 부서장 등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 ③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④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⑤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때 위원 중 2명은 외부위원으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인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71조(자격) ①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의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2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학교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의2(일반직원의 정년) ①일반직원의 정년은 만61세로 한다.

②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학교의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설치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7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이사장이 정한다.

제2절 학교

제78조(총장) ①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삭제 2018.11.09.)

④(삭제 2018.11.09.)

제79조(행정부서) ①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기획행정처, 교무학생처를 둔다.

②부서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서에는 팀 또는 센터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80조(부속기관) ①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는 부속기관에는 경건훈련원, 도서관,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원, 성경과 신학연구소, 출판부, 생활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81조(도서관)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82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첨 1 및 별첨 2와 같다.

제7장 보칙

제8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기독교계신문에 공고한다.

제8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청렴의무 등)

①학교법인의 이사장,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기간	주 소
1	이사장	이 죽 봉	1937.12.19	4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03번지 20호 (12/4)
2	이 사	정 병 기	1938.11.12	4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9번지 54호 (1/9)
3	"	전 재 영	1923. 2.19	4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84 생연주공APT 10동401호
4	"	한 용 빈	1932. 2.10	2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APT 10동 1601호
5	"	이 석 제	1951. 4.21	2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03 - 5
6	"	서 창 곡	1952. 7.25	4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103-6
7	"	강 덕 원	1949.11.17	4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APT 528-603
8	"	최 도 섭	1946. 3. 3	2년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4 10/3 진로APT 717동 902호
9	"	이 순 례	1948. 9.17	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535 탑마을APT203-502호
1	감 사	백 남 석	1937.11.13	2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APT 6동 1111호
2	"	한 재 화	1953.12.25	1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 565 우성APT 15동 303호

부 칙

①이 정관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학교법인 순장학원 일반 직원 정원

구 분	인 원	비 고
총 계	5	
일 반 직 계	5	
2급 (참 여)		
3급 (부참여)	1	
4급 (참 사)	1	
5급 (부참사)	1	
6급 (주 사)		
7급 (주사보)		
8급 (서 기)	1	
9급 (서기보)	1	
기 능 직 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별첨 2)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일반 직원 정원

구 분	인 원	비 고
총 계	10	
일 반 직 계	7	
2급 (참 여)	1	
3급 (부참여)	1	
4급 (참 사)	1	
5급 (부참사)	1	
6급 (주 사)		
7급 (주사보)	1	
8급 (서 기)	1	
9급 (서기보)	1	
기 능 직 계	3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	
7등급	1	
8등급	1	
9등급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재산 의 종류	소 재 지	지 번	지목, 용도	지적(㎡)	구입가액 (천원)	비 고
교 육 용 기본재산	토 지	동작구 신대방동	632-5 7 외	대 지	1,084㎡	975,600	
	건 물	위 지 상	위 지 상	교육연구시설(교육원)	1,723.98㎡	962,484	
	계					1,938,084	
수 익 용 기본재산	현 금					500,000	
	계					500,000	
기 타						50,000	
합 계						2,488,084	